

2006. 7.

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

종합민원과

목 차

□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	3
□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	9
○ 고객 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	11
○ 전자화 민원행정 구현	12
○ 민원사무 편람 제작	13
○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	14
○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	15
○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	16
○ 구 지적공부 전산화	17
○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	18
○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/S제 운영	19
○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·결정	20
○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 추진	21
○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	22
□ 특수시책	23
○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	25
○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점검 및 모범업소 표창	26

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

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추진실적	진도 (%)
고객만족 민원서비스	○ 민원행정서비스추진	○ 고객만족 평가결과 1회 - 만족 90% - 보통 -% - 불만족 10% ○ 자체 친절교육 매주 1회 21회 ○ 민원만족도 설문함 비치 2개소 ○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1회/31명	100
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조성	○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	○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운영 5대 - 대여실적 24회 ○ 인터넷 무료 카페 운영 연중 ○ 화분대여 진열 매주5점 교체 ○ 멀티큐브운영 연중 ○ 전광판 군정홍보 연중 ○ 양심우산 대여제 운영 20개 ○ 민원인전용도서 구입운영 매월 ○ 의료기구설치 혈압기의외 3종	100
주요민원 시책추진	○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책	○ 팩스민원 및 여권발급 휴대폰 문자 안내 - 여권외 303종 2,619건 ○ one-stop 민원 상담제 운영 - 위치 : 민원실입구 - 근무 : 상담관 1명	100

사업명	사업내용	추진실적	진도(%)
창구민원 신속·정확 추진	○ 민원1회 방문처리	○ 유기한민원처리 8,991건 - 복합민원처리 1,322건 - 단순민원처리 6,419건 - 고충민원처리 83건 - 즉결민원처리 1,167건	100
	○ 전자민원 창구운영	○ 인터넷 민원처리 12,813건 - G4C 민원처리 12,568건 - 군 홈페이지이용 245건 · 사이버신문고 214건 · 전자민원상담 31건 ○ 행정정보공동이용 26,025건	100
	○ 연간 민원처리량	○ 창구 즉결 민원 161,845건 - 토지(임야)대장,지적(임야)도 발급 및 열람 118,368건 -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,213건 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2,348건 -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3,419건 -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150건 -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6,337건 - 인감증명서 발급 1,099건 ○ 무인민원증명 발급 - 등기부 등본 외 15종 11,967건 ○ 어디서나 민원(증명, 교부) - 지적도외 302종 18,908건 ○ 여권 신청 접수 1,013건	100

사업명	사업내용	추진실적	진도(%)
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	○ 토지이동 및 소유권정리	○ 토지이동정리 5,543필지 ○ 소유권정리 5,650필지	100
	○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	○ 등기 촉탁 5,392필지 - 분 할 2,227필지 - 합 병 598필지 - 지목변경 2,467필지 - 기 타 100필지	100
	○ 지적측량 성과검사	○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 4,206필지 - 등록전환 103필지 - 분 할 4,020필지 - 기 타 83필지	100
	○ 지적측량 결과 A/S제 운영	○ 지적측량 결과 A/S제 운영 우편엽서 발송 - 우편엽서 발송건수 656건 - 우편엽서 불만족건수 1건	100
	○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- 2006. 1. 1일 기준	○ 표준지조사결정 2,218필지 ○ 조사필지수 139,669필지 ○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39,669필지 ○ 산정지가 검증 46,507필지 ○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39,669필지 ○ 의견 제출 필지 542필지 ○ 이의신청 접수 514필지	100
	○ 부동산 검인	○ 부동산 검인 계약 3,419건	
	○ 토지거래 허가	○ 토지거래 허가 16건	

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

고객중심의 민원실분위기 조성

민원실을 머물다 가는 고객 중심의 『쉼터 공간』으로 발전시켜
진정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민본위주의 민원행정 기틀마련

□ 추진방침

-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
- 민원인을 내 부모 내형제처럼 모시는 창구 분위기 조성

□ 추진계획

- 민원인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 무료운영
 - 인터넷 무료서비스 지속운영
 - 컴퓨터 3대, 프린터기 1대, FAX 1대, 복사기 1대
 - 혈압측정기, 체중기, 신장측정기, 안경세척기, 돋보기 등
 - 고객을 위한 양질의 식수제공 정수기 1대
- 고객편의 민원시책 활성화
 - 민원인용 자전거 및 양심우산 대여제 운영 자전거 5대/우산 20점
 - 민원대 화분 교체 진열 매주 5점
 - 영상홍보시설 및 군정홍보 멀티큐브, 전광판
 -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여유시간 활용 신문, 잡지, 각종 홍보물

□ 기대효과

-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
- 다양한 민원시책 이용으로 주민의 편의 증대

전자화 민원행정 구현

- 시급을 요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히 처리
-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고객만족의 민본행정 구현

□ 추진 방침

-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답변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궁금증 해소
- 문제점 발굴 개선으로 선진 사이버 민원행정 체계 구축

□ 사이버 민원 창구 운영

- 군수에게 바란다
- 전자민원 상담

□ 세부추진 계획

○ 법정처리기간 단축 운영

- 일반민원 7일이내 → 3일이내 처리
- 법령에 의한 질의 14일이내 → 7일이내 처리

○ 민원처리의 내실있는 운영

- 처리결과 보고 (종합민원과→군수) 매주
- 민원처리 현황 통보 (실·과·소) 매월

□ 기대 효과

-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
-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군정 반영으로 열린행정 구현

민원사무 편람 제작

-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
-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, 시정 절차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추진계획

- 민원사무처리 기준 및 불이익처분편람 자료 작성

- 대상 : 실·과·단·소
- 기간 : 2006. 7. 30일까지
- 정비내역 제출기한 : 2006. 7. 30일한

- 인쇄 및 교정 : 2006. 8 ~ 9월까지

- 규격 및 재질 : 18절 80모
- 소요 금액 : 500만원정도(추경확보 시행)

- 편람정비 완료 : 2006. 10월말

- 실·과·단·소·읍면별 가제정리 후 민원인이 활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

□ 기대효과

-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
-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 제공
- 민원인을 맞이하는 고객중심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

토지 종합 정보망 구축사업

- 전자도면상에 지형, 지적, 도시계획, 용도 지역지구, 국토이용계획 개별토지특성, 공시지가자료, 토지거래 등을 D/B구축
- 필지별 모든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 민원 서류를 전산화일에 의하여 신속, 정확한 발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

□ 추진 방침

- 각종법령에 근거한 여러 가지 도면 및 자료를 전산 화일에 D/B구축
- D/B입력된 내용을 철저한 검수로 완벽한 자료 구축
- 지적도 전산 화일을 적기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 체계 구축

□ 추진 계획

- D/B 입력자료 정비 2006. 7~8월(토지 이동분)
-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 발급 2006. 9월경
- 대상업무 6대 토지 관리 업무 및 유관업무
 - 토지 관련 대장, 도시 관리 계획 내 용도지역·지구
농업 진흥 지역, 보전 및 준 보전지역, 하천구역
군사시설보호구역, 문화재보호구역, 하수처리구역
- 추진실적 D/B 구축 완료/ 195,000천원(전액 국·도비 지원사업)

□ 기대 효과

- 토지 관련 민원 발급에 필요한 시간, 절차 간소화
- 각종 공간자료를 D/B화 하여 토지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

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

- 국제 표준인 도로명 주소 제도 도입으로 국민 편의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
-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생활주소로 활용

□ 업무개요

- 토지지번 및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제 변경
 -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건물에 번호 부여, 생활주소로 활용
-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서식은 현행대로 사용

□ 세부추진 계획

- 단계별 추진계획 2006년 ~ 2009년(4년간)
 - 1단계(2006년) 음성읍
 - 2단계(2007년) 금왕읍, 소이면, 원남면
 - 3단계(2008년) 맹동면, 대소면, 삼성면
 - 4단계(2009년) 생곡면, 감곡면
- 소요예산 (단위 : 백만원)

추진기간	총사업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비고
2006~2009 (4년)	1,400	133	800	300	167	
	700	67	400	150	83	- 국·도비 50%
	700	66	400	150	84	- 군비 50%

□ 문제점

- 소요예산 :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본예산 계상
- 인력 : 업무 추진단 설치 운영 - 공무원 5명 내외

□ 기대효과

- 공공부문의 GIS화를 촉진시켜 전자 정부 구현
-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서비스로 국민 편의 증진 기여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

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등기사항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도모

□ 추진 방침

- 담당공무원 및 보증인 교육 실시
-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전량 정리

□ 추진 계획

- 적용대상 범위
 - 1995. 6. 30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
 -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
- 시행기간 2006. 1. 1~2007. 12. 31
- 적용대상
 -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
 -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토지
- 예상 업무량 8,000필지
- 추진실적(2006.06.30일 현재) 359필지

□ 기대 효과

- 미등기 토지의 해소 및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
- 주민의 등기비용 등 경제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주민편의 제공

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

-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
-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철저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
-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·확인으로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

□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

-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 총 1,124점
 - 지적삼각점 8점, 지적 삼각 보조점 9점, 도근점 1,107점
- 도근점 재설치 30점
 - 설치시기 2006. 7월 중
 - 소요예산 5,544천원
-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70점
 - 설치시기 2006. 10월 중
 - 소요예산(도비 50%, 군비 50%) 6,930천원

□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

- 검사대상 지적 기초측량, 세부측량 등 측량업무 전반
- 연간 계획량 4,000필지 정도
- 하반기 측량성과 검사대상 필지 1,500필지 정도
- 측량 검사기간 단축 7일이내 → 5일이내
- 지적측량 검사 강화
 - 측량준비도 작성시 군 검사 확행
 - 측량대행계획서 검토철저로 측량지연 예방
 - 지적측량 성과 검사시 현지 측량검사 이행 철저

□ 기대 효과

-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점 확보
- 기준점을 이용한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측량 신뢰 회복
-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

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/S제 운영

지적 측량 업무의 개방에('04.1.1)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 등 민원발생 증가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서 신뢰받는 지적측량 서비스 실현

□ 추진 방침

- 측량의뢰인에게 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 함께 통지
 -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
- 불만족회신 건은 자료 조사 등 검토 후 민원인과 협의 현지 확인 측량
 - 지적공부 정리를 하지 않는 측량(경계복원 등)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적공사의 「지적측량 실사 위원회」 회부
(청구인 : 민원인, 지사장, 본부장)
- 「지적민원 10%줄이기 운영」 과 연계 추진

□ 추진 계획

○ 대 상	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(일반업무)
○ 업무량	1,161건
- 토지이동측량	250건
- 경계복원측량	706건
- 지적현황측량	205건

□ 기대 효과

- 지적측량 신청인의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 및 궁금증 해소
- 경계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 사전 예방
-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성과 등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·처리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

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·결정

-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조사·결정하여,
- 토지관련 국세, 지방세, 각종 부담금 등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공시지가 업무 행정의 신뢰성 제고

□ 추진 방침

- 행정구역(읍면별) 및 인근지역 연도별 지가 균형유지
- 지가조사담당의 세밀한 현장조사에 의한 토지 특성조사

□ 2006년도 추진 실적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○ 표준지 조사결정 | 2,218필지 |
| ○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| 139,669필지 |
| ○ 산정지가 검증 | 46,507필지 |
| ○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| 542필지 |
| ○ 이의신청 접수 | 514필지 |

□ 2006년도 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현지조사 및 산정 | |
| - 특성조사 및 산정 (2006.7.1일기준) | 2006. 7. 3 ~ 8. 25 |
| ○ 지가결정·공시 | 연2회 |
| - 2006. 1. 1일기준 | 2006. 5. 31 |
| - 2006. 7. 1일기준 | 2006. 10. 31 |
| ○ 이의신청시기 | |
| - 2006. 1. 1일기준 | 2006. 6. 1 ~ 2006. 6. 30 |
| - 2006. 7. 1일기준 | 2006. 11. 1 ~ 2006. 11. 30 |
| ○ 사업 예상량 | 3,000필지(변동분) |

□ 기대 효과

-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,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
- 조세 부과, 토지관련 공개념, 각종 부담금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

토지거래계약 허가

-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확정 발표와 함께 예정지 및 주변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
-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통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도모

□ 추진 방침

- 혁신도시 확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내 투기행위 근절
-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고충민원 사전예방과 업무능률 향상
- 서민경제의 기본 틀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

□ 추진 계획

- 지정기간 2006. 1. 4 ~ 2011. 1. 3(5년간)
- 지정지역 맹동면 쌍정리, 신돈리, 본성리, 두성리, 통동리, 군자리
- 허가대상 허가구역내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, 지상권의 유상거래
- 허가대상 토지면적
 - 농지 : 500m²초과시, 임야 : 1,000m² 초과시
 -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: 250m² 초과시
- 허가기준
 - 실수요성 : 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여부
 - 이용목적의 적절성 :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
 - 면적의 적합성 : 토지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에의 적합성
- 허가절차
 - 허가신청 → 현지조사 → 처분

□ 기대 효과

-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 기여
-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 능률 향상

개발 부담금 부과·징수

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□ 추진 방침

- 1990. 1. 1일 최초 시행
- 2005. 1. 1일 이후 인가 받은 사업부터 부과중지(부담관리기본법)
- 2006. 1. 1일부터 재 부과
(법률 제7709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<2005.12.07>)

□ 추진 계획

- 부과대상사업
 - 택지개발, 공업단지 조성, 도심지 재개발, 유통단지 조성, 관광단지 조성, 지목변경 등 총 10종 30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
- 도시 계획 구역 : 990m²이상(특별시, 광역시 660m² 이상)
- 도시 계획 구역 외 지역 : 1,650m²이상
- 납부의무자 : 사업 시행자
※ 토지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
- 부담금 산정방법
 - 사업 준공 후 3월이내에 부과
 - 부과 후 6월이내 납부

□ 기대 효과

- 토지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

특 수 시 책

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

- 여권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 등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
-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 휴대폰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어 궁금증 해소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

□ 추진 방침

-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전송
- 휴대폰이 없는 민원인을 전화로 안내

□ 추진 계획

○ 운영시기

- 어디서나민원 : 2003년부터 시행
- 여 권 : 2005. 4. 19 부터
- 인터넷 민원 : 2006. 1. 1 부터

○ 운영방법

- 민원신청서에 민원인 휴대폰 또는 전화번호 기재
- 음성군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에서 문자 전송
- 대상민원 : 여권수령 및 어디서나 민원, 인터넷민원 처리결과 안내

□ 기대 효과

- 민원처리경과의 신속통보로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
-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

부동산중개업소 지도·점검 및 모범업소 표창

부동산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지도·점검하여 투기조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범 중개 업소를 지정 표창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

□ 추진 방침

-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점검 및 투기 우려지역 동향파악 철저
-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표창

□ 추진 계획

-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·점검
 - 점검대상 : 부동산중개업소 128개소
(법인 3, 공인중개사 101, 중개인 24)
 - 정기점검 : 분기 1회
 - 수시점검 : 수시
-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고발창구 운영
-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및 선발 : 12월중
 - 선발대상
 - 3년이상 업소 운영
 - 최근 1년간 15건 이상 중개 실적이 있는 업소

□ 기대 효과

- 부동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도모 및 바람직한 공인중개 업무제도 확립
- 실무 교육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부동산 중개업자 양성